

##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. 12. 9 조례 제2358호  
일부개정 2023. 6. 30 조례 제2416호  
일부개정 2024. 1. 10 조례 제248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용인시 미디어센터”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인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에게 제공되는 교육·제작·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30>

제3조(명칭, 소재지 및 시설) 용인시 미디어센터(이하 “미디어센터”라 한다)의 명칭, 소재지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.

[전문개정 2023. 6. 30]

제4조(휴관일)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일요일을 제외한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
3. 매주 월요일
4. 그 밖에 시설·장비의 유지·보수·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시설 및 기능) ①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, 교육공간, 제작공간, 상영공간,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.

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전 연령,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

2. 미디어 체험·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
3.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
4.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
5. 그 밖에 미디어센터 관련 시민 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승인 및 사용신청)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용인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 6. 30>

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(감면)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(감면) 신청서를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미성년자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30>

[제목개정 2023. 6. 30]

제7조(사용자의 의무)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30>

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 및 수강료 등) ①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30>

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,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. <개정 2023. 6. 30>

1.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,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
2.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또는 교육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: 전액

3.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,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: 전액

4. 과오납한 경우: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금액

③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.

1.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: 3분의 2

2.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: 2분의 1

3.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: 전액 미반환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.

1.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·조직된 비영리 법인·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
2.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

3.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. 10>

1. 전액 감면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2. 50퍼센트 감면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
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·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마.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

바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사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, 청소년동아리, 청소년단체

아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자. 용인시의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

제9조의2(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)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
3. 미디어센터 시설 및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23. 6. 30]

제10조(위탁)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〈개정 2023. 6. 30〉

② 시장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,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11조(운영 지원)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삭제 <2023. 6. 30>

제13조(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미디어센터 사업 계획과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2.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·개선에 관한 사항
3.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
4.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3. 6. 30]

제1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장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  - 가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
  - 나.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
  - 다. 그 밖에 미디어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[본조신설 2023. 6. 30]

제1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6. 30]

제1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

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30]

제1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30]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 <2023. 6. 30 조례 제241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3호의 장비사용료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칙 <2024. 1. 10 조례 제248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<신설 2023. 6. 30>

##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명칭, 소재지 및 시설

(제3조 관련)

명 칭	소재지	시 설
용인 미디어 센터	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09(동백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튜디오(대/중/소)</li> <li>- 회의실</li> <li>- 1인 미디어제작실</li> <li>- 그 밖의 부대시설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디어교육실</li> <li>- 오디오 스튜디오</li> <li>- 교육준비실</li> </ul>
공유 스튜디오	용인시 기흥구 지삼로198번길 32(지곡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명 스튜디오</li> <li>- 사무실 및 회의실</li> <li>- 편집실 및 분장실</li> <li>- 그 밖의 부대시설</li> </ul>

[별표 2] <개정 2023. 6. 30>

## 용인시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(제8조 관련)

### 1. 시설사용료

시 설 명	기 준	사용료(원)	비 고
스튜디오(대)	1시간	20,000	
스튜디오(중)	1시간	10,000	
스튜디오(소)	1시간	5,000	
미디어교육실	1시간	10,000	
회의실	1시간	3,000	
오디오 스튜디오	1시간	3,000	
1인 미디어제작실	1시간	3,000	
공유 스튜디오	1시간	15,000	지곡동 소재

- 1)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- 2) 대관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. 단, 센터에서 사전에 승인한 경우 운영시간 외에도 가능
- 3) 시설 내 장비 사용 시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

### 2. 장비사용료

장 비 명	기 준	금 액(원)	비 고
영상카메라	1일	3,000 ~ 100,000	
렌즈	1일	3,000 ~ 50,000	
카메라악세사리	1일	1,000 ~ 30,000	
조명장비	1일	3,000 ~ 50,000	
조명악세사리	1일	3,000 ~ 30,000	
사운드장비	1일	3,000 ~ 30,000	
그 밖의 장비	1일	3,000 ~ 100,000	

- 1) 장비를 대여하고 그 날 반납하는 경우 1일로 계산
- 2) 시설 외에서 해당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사용승인

### 3. 강좌수강료

분 류	기 준	수강료(원)	비 고
정규강좌	1개월	40,000	교재비, 재료비 제외
특별강좌	1일	별도로 정한 금액	

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3. 6. 30>

## 용인시 미디어센터 시설·장비 사용(감면) 신청서

※ 작성법 :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□에는 ✓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앞면)

신 청 인	개 인 ( 단 체 ) 명			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( )
	소 속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·장비 사용( )
	성인 및 성별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성년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성별(남, 여)	
	※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'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				
	주 소				
	이 메 일	@			
연 락 처	· Tel		· HP		
사 용 기 간	년 월 일( 시 분)		~	년 월 일( 시 분)	
사 용 시 설 및 대여장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스튜디오(대) <input type="checkbox"/> 스튜디오(중) <input type="checkbox"/> 스튜디오(소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디어교육실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오디오 스튜디오 <input type="checkbox"/> 1인 미디어제작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유스튜디오(자극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여장비(장비명 : )				
이 용 목 적	행 사 명				
※ 필수 기재	행 사 내 용 ※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				
예상이용자 (공동작업 인원수)	총 명	감 면 여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(감면대상자만 표시)	
* 감면기준은 「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 참고 *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(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)					
「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미디어센터 시설·장비 사용을 신청하며, 시설·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.					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					
신청인 개인(단체)명 :					(서명 또는 인)

**□ 용인시 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**

-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,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.
-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

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3. 6. 30>

<b>용인시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반환신청서</b>				
<b>신청인</b>	성 명 ( 단 체 명 )		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사용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비대여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	소 속		연 락 처	
	주 소			
<b>신청 내용</b>	사 용 시 설 및 장 비			
	사 용 일 시			
	반 환 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반환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반환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	반 환 금 액	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(W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	
	입 금 계 좌	예 금 주 명	※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	
은 행 명				
계 좌 번 호				
<b>개인정보 취급 동의</b>	수 집 목 적	시설 및 장비 사용료 반환 신청 관리		
	수 집 항 목	개인(단체)명, 소속, 주소, 연락처		
	보 유 기 간	1년		
	수 집 동 의 거부의 권리	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 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반환처리가 불가합니다.		
	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?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안함			
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, 위의 개인정보 수집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			
<p>「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개인(단체)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용인시장 귀하</b></p>				